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4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09나738 구상금
원고, 피항소인	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■■■■■
피고, 항소인	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○○법무법인 담당변호사 ■■■■■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2008. 12. 4. 선고 2008가소36894 판결
변 론 종 결	2009. 6. 16.
판 결 선 고	2009. 7. 14.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
2.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1,775,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5. 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대구○○호 택시(이하 "원고 측 택시"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는 대구○○호 택시(이하 "피고 측 택시"라 한다)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.

나. 임○○은 2006. 11. 10. 00:16경 원고 측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1396-1 동서장애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배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, 그곳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○○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원고 측 택시의 우측 앞문 부분이 충돌하였고, 그 충격으로 이○○의 오토바이는 그곳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측 택시를 들이받았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 이○○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.

다.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○○에게 2007. 2. 13.부터 2007. 5. 3.까지 치료비 등으로 합계 39,252,660원을 지급하였다.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, 을가 제2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는 도로에 피고 측 택시를 정차함으로써 원고 측 택시와 위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하였는바,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, 피고 측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한 원고에게 피고 측 택시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 택시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나아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정차금지구역에 해당한다거나,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정차 방법에 위반하여 정차하는 등 위 정차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, 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갑 제11호증의 1, 을가 제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, 피고 측 택시가 정차하고 있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, 피고 측 택시의 운전자인 김○○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려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측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피

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형한 _____

 판사 박현경 _____

 판사 장동민 _____